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379
----------	------

2021년 6월 2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안일자 : 2021년 5월 25일
- 다. 회부일자 : 2021년 5월 31일
- 라. 상정결과 :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년 6월 22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문화본부 유연식)

가. 제안이유

-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를 조성하고자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이념 및 지침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민’의 정의를 정비하고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
-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이념을 정비함(안 제3조).

-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비함(안 제7조).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의 원칙 및 지침 준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위원회의 심의사항 정비 및 도시공원위원회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추가함(안 제13조).
-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기능을 정비하고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및 제21조).
- 유니버설디자인에 시민의 참여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2조의2).
-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사업을 규정함(안 별표 1 및 별표 2).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없음
-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1. 4. 1.~4. 21.)결과: 의견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가. 개정안 개요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독자성 및 합리성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대상 유니버설디자인의 의무 적용

의 법적 근거를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개정의 필요성

- 전 세계적으로 초고령화 사회 진입, 다양성에 대한 존중, 사회 복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¹⁾.
-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범용디자인, 포용디자인이라고도 표현하는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은 미국의 건축가 로널드 메이스(Ronald L.Mace)가 최초로 용어를 정리하였고, 신체적으로 불편한 일상생활의 물리적 불편함을 없애고 기능적 한계를 돕는 배리어프리디자인(Barrier Free Design)보다 좀 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디자인으로 볼 수 있음.
- 현재 국내에는 아래 표에서 보듯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등 배리어프리 중심의 법률로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내용이 그동안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교통약자, 노인, 임산부 등의 다양한 사용자층을 포괄하는 법률도 있으나 유니버설디자인이 추구하는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디자인의 개념이 반영된 상위법령이 없는 상황임.

<국내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주요 제도 현황>

연번	법규명	목적	대상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	장애인, 노인, 임산부
2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	교통약자

1) 장혜진, '사회변화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방향성', 성신여자대학교, 2020, p.165.

	이동편의증진법 (2005년)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7년)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	장애인
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2008년)	건축물 등의 개별시설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이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설치관리여부를 평가인증하는 제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
5	장애물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규칙(2010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장애인
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2010년)	안전하고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지 증진	불특정 대상
7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2011년)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는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어린이, 노인
8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2011년)	장애물 없는 시설의 참여와 확산에 중점을 두고 건축물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의무설치 여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보행약자
9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2016년)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 증대	불특정 대상

- 이와 같이 국가적 차원의 법·제도의 기반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5곳 광역지자체에서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과 사업의 추진 방안으로서 유니버설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주로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함으로써 적용범위가 물리적 영역에 한정되어 정보, 서비스, 문화, 교육 등의 영역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음²⁾.

2) 설영동 외, '공공영역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현황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제15권 1호 통권 62호, 2020, p.198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시도명	조례명	목적
1	경기도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2013년)	환경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여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
2	전라북도	전라북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2015년)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함으로써 도민 모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 영위
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2016년)	도민을 비롯한 제주에 머무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조성
4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2017년)	생활환경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화된 디자인을 도입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
5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2017년)	유니버설디자인의 보급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보편적인 환경속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 조성

- 한편, 서울시는 관련 법정계획이 전무한 상황에서 '16.5월 동 조례를 제정하고 유니버설디자인통합가이드라인 수립에서 더 나아가 '20.8월 유니버설디자인을 전면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종합계획(행정1부시장 제204호)'을 수립하여 서울시 행정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관련 정책들을 통합하고자 하며,

'21.1월부터 모든 공공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권고 수준을 넘어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20.6월 '서울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출범시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실행력을 제고시키는 등 유니버설디자인을 시정의 핵심철학으로 삼고자 하는 바, 이러한 정책 운용의 추진 동력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3조제7호의 경우 ‘정보통신기술 등 신기술에 융합 가능한 디자인 적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술 발전 속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해 개인 또는 집단이 소외받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정보통신기술 등 신기술 이념을 추가하고자 함.
- 이와 관련하여 '20.8.월 서울디자인재단에서 ‘UD 라이프스타일 제품디자인 공모전’ 개최하였고 결과는 아래와 같음.

<UD 라이프스타일 제품 디자인 공모전 결과>

구분	상격	이미지	작품명
일반	대상		Diabetes Step (당뇨 환자를 위한 슬리퍼) - IOT 연동 발 상태를 통해 당뇨병환자 상태 관리
기업	대상		브래들리 타임피스 - 저시력자를 위한 손목시계 - 저시력자 중심 라이프스타일 제안
일반	금상		요양시설용 이동식세면대 - 간병인의 노동감소와 업무 효율을 위한 요양시설용 이동식 세면대 디자인
기업	금상		플레이웍스 - 1인 사용자를 위한 가구 세트

- 그 외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사례를 살펴보면, 스마트폰 환경에서 농인과 농인, 농인과 청인사이의 감정 전달 방식과 의사소통 방식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텍스트와 이모티콘을 결합한 ‘AI

기반 수화통역 및 수화티콘'제작을 통해 정보의 격차를 줄이고 원활한 교류를 이끌어 내며³⁾,

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제품이나 환경 디자인 분야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을 연구하고 실무에 적용했던 것처럼 기능성 게임 콘텐츠 분야에서도 노년층만을 위한 복지시스템의 일부가 아닌, 게임성 높고, 누구나 즐기고 싶어지는 유니버설 기능성 게임디자인의 방향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⁴⁾,

기존에는 건축과 환경을 중심으로 한 공공 시설물 중심으로 적용의 범위가 집중되어 있었으므로 신기술과 융합한 제품, IT,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등에도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4조의 경우 시장의 책무에 시책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조직, 재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임.
- 서울시는 2020년 모범이 없는 상황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전담 기구인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치·운영, 공공부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의무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종합계획(2020~2024)'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수립하였으며,

3) 박상아 외,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한 AI 기반 수화통역 및 수화티콘 디자인 제안', 한국HCI 학회, 2021, p.946.

4) 김현정, '노년층을 위한 기능성 게임의 유니버설디자인 방향성에 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 학회, 2017, p.263

민간에서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후속계획의 수립으로 서울시 및 자치구는 물론, 전국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어떻게 나아갈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

- 안 제10조의 경우 기존 ‘가이드라인’이 영어식 표현이므로 ‘적용 지침’으로 순화하고자 하며, 점검표 및 시설 유형별 지침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면적, 경사도 등 과도하게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들의 정리를 통해 지침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며, 현재 유니버설 통합가이드라인 외에도 사례집 성격의 시설유형별 적용 지침을 제작·배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는 것임.

- 다만, 현재 점검표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체크방식의 모호성과 항목의 혼용에 따른 판단을 최소화하고 비전문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화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는 등 전반적인 재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모니터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안 제11조의 경우 시 또는 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관련 사업에 대해 유니버설디자인을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준수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시는 '16년 도시환경의 기본이 되는 가로, 건축물, 공원 등에 대해 관련 법령·지침 15개를 종합 단일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 관리 점검 행정 체계가

미흡하여 '19년 우리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강제적용 방안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시정 전면 확산과 서울시 각종 심의 및 제도 안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이 통합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의무화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즉 배리어프리 인증제도가 시행된 지 10년 동안 인증 주체별 인증 건수는 공공부문이 약 80%, 민간부분은 20%로 공공에 편중돼 있는데⁵⁾ 현재 조례나 가이드라인이 공공영역 위주로 수립되어 있으므로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하고 사회통합을 추구하기 위해 신기술 출현과 사업 다각화에 따라 민간영역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이 더욱 확대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안 제13조의 경우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자문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를 추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실질적인 적용범위를 확장하고자 함.
- 이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건축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와 심의 절차 연계를 통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확장시키려는 지자체 중 최초의 시도으로써 절차적 중복성을 방지하면서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5) 장혜진, '사회변화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방향성', 성신여자대학교, 2020, p.172

- 다만, 현 위원회에서 심의 절차의 누락, 설계자 및 전문가 중심의 평가 등으로 인한 이의제기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직접 심의에 참여하고 불편요소가 처음부터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안 제20조의 경우 기존에 두서없이 나열되어 있던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기능을 세 가지로 명시함으로써 이해하기 쉽게 하며, 불명확하거나 지나치게 세밀하게 규정된 센터 업무를 삭제 또는 조정하고,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인식 확산에 대한 기능을 추가하고자 함.

- '18.10월, 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조성·운영 민간위탁 심의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에 대한 “디자인정책과와 서울디자인재단과의 업무 역할 구분 및 연계를 보완해달라”는 조건부로 승인하였고,

이에 디자인정책과는 유니버설디자인 모니터링 및 평가, 컨설팅 및 사업발굴,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서울디자인재단은 체험관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상품, 제품개발 등 산업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를 보완하였으나,

'20.10월 실무협의회 개최 결과 디자인정책과의 유니버설디자인 업무 대부분을 유니버설디자인센터에서 수행하고, 디자인정책과는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인증제 운영 및 유니버설디자인 센터를 지도·감독하는 것으로 분담되어 있으므로

<유니버설디자인 추진 주체별 역할>

※ 추진 주체별 역할 및 체계	
서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회 총괄, 정책 수립 및 조례 등 제도개선, 인증제 운영, •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지도감독)
UD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실행 연구,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및 모니터링 • 시민 대상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운영, 홍보
서울디자인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UD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조성 및 전시 운영 • 유니버설디자인 산업 활성화

각 주체별 현안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연계되어 고령화, 정보화, 세계화, 다양화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현상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의 확산을 위해 필요하고 중요하고 연속적인 사업들을 발굴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서울시는 2015년부터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을 시행했고 시민체험단을 구성하여 공공공간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여전히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배리어프리 개념 그 이상의 개념으로 확장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어린이, 학생, 노인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하고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과 고령자,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시민 공감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할 것임.

라. 종합 검토 의견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독자성 및 합리성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대상 유니버설디자인의 의무 적용의 법적 근거를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유니버설디자인은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등 사회 전체를 인간 중심적, 다양성 포용, 시민 참여, 공정 사회로 나아가고 미래지향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패러다임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동 조례개정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서울시, 서울디자인재단, 유니버설디자인센터 등 각 주체별 현안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연계되어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고,

다양한 계층의 공감형 콘텐츠 발굴 및 제작으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 시정에 구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위해 각 사업별 특성화된 매뉴얼 수립과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마련도 반드시 필요할 것임.
-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정계획이 전무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의 종합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모든 공공건축물에 대

해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권고 수준을 넘어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기능 정립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책 운용에 추진 동력을 높이기 위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담당 조사관	연락처
이지영	02-2180-8115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수정안의 요지 : 없음.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79
----------	------

제출년월일 : 2021년 5월 25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를 조성하고자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이념 및 지침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민’의 정의를 정비하고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
- 나.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이념을 정비함(안 제3조).
- 다.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비함(안 제7조).
- 라.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의 원칙 및 지침 준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마.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위원회의 심의사항 정비 및 도시공원위원회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추가함(안 제13조).
- 바.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기능을 정비하고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및 제21조).
- 사. 유니버설디자인에 시민의 참여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2조의2).

아.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사업을 규정함(안 별표 1 및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없음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1. 4. 1.~4. 21.)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및 장애의 유무와”를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로, “설계하는”을 “계획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관광객을 포함한 시를”을 “일시적으로 시에”로, “사람을 말한다.”를 “사람으로서 이용자와 종사자를 불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이란 유니버설디자인을 구현함으로써 도시 내 모든 사람이 그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말한다.
5.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이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해 시가 개발하여 배포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니버설디자인은”을 “유니버설디자인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정보통신기술 등 신기술에 융합 가능한 디자인 적용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및 진

흥·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력, 조직, 재원의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전문가 또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행정구역 안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공간·시설 등에 적용된다.

1. 「건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 같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공공간 또는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의 공적공간 등
2. 도로(차도·자전거도·보도) 또는 그 부속시설물 등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4.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등
5. 그 밖에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복지시설, 교육시설, 체육시설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가이드라인 수립)”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점검표를 배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경우에는”을 “지침은”으로, “사항을 고려”를 “원칙에 따라 수립”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로, 공원, 시설, 건축물, 그 밖에 일반 시민에게 이용되는 공간 또는 시설 등에 요구되는 실용적이고 통합적인 유니버설디자인의 제시
2. 모든 시민의 접근성, 편리성, 안전성, 쾌적성, 선택 가능성을 높이는 도시 조성을 위한 지침의 제시
3. 모든 시민이 지침을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높은 내용 제시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 외에도 세부유형별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

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1조(지침 등의 준수) ①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속부서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점검표를 작성하여 심의를 주관하는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2회 이상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시장이 정하는 하나의 부서에 제출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에서 심의 전 유니버설디자인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점검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관련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별표 1 유니버설디자인 심의대상 사업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관한 사항
 4. 별표 2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의 인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제13조제2항 전단 중 “진흥위원회 및”을 “진흥위원회,”로, “건축위원회”를 “건축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5조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진흥위원회 및 건축위원회”를 “진흥위원회·건축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로, “전문가”를 “전문가(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전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별표 1에 따른 심의대상 중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소관 사항 및 그 밖에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는 사항
2. 건축위원회: 별표 1에 따른 심의대상 중 건축위원회 소관 사항
3. 도시공원위원회: 별표 1에 따른 심의대상 중 도시공원위원회 소관 사항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제5호로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진흥·발전을 위한 전문적 연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업무
가.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및 신사업 발굴

- 나. 지침 수립·고도화 및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관련 연구
- 다. 유니버설디자인 현황 또는 실태 조사
- 2.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실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업무
 - 가. 유니버설디자인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나.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관련 사업의 기획·실행·지원
 - 다.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자문·모니터링
- 3.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정보 제공·공유
- 4.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교육·홍보·인력양성 및 인식개선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내에서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여 제공”을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해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발 또는 적용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시범사업)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추진에 관한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듣거나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전문가의 참여)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의견청취 방법, 위촉 방법, 활동범위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3조 전단 중 “밋”을 “또는”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유니버설디자인 심의대상 사업

구분	심의대상	비고
보도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내지 2호의 도로 중 보도가 포함된 도로 또는 그 부속물의 신설, 확장, 개량, 보수 등에 관한 사항(단, ‘부속물’의 경우 설치방법 및 배치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소관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도시공원위원회 소관
건축	’시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하는 업무시설, 문화시설, 집회시설, 노유자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사항	건축위원회 소관
교통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제2조제3호가목의 버스터미널·정류소 및 나목부터 마목의 시설(표지판·안내사인 등 그에 부가된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설치에 관한 사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소관

[별표 2]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분 류	세 부 항 목
정보매체	정보 접근성 및 길 찾기에 대한 차별이 없는 다양한 정보매체 디자인
시설물	다양한 시민의 행태와 사용상 편리성과 안전성을 반영한 시설물 디자인
공 간	다양한 시민의 접근성, 이동 연계성 및 편의성이 있는 공간 디자인
지 역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유니버설디자인
프로그램	유니버설디자인 인식개선 및 확산을 위한 교육·체험·문화행사 등 프로그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p> <p>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이란 유니버설디자인의 구현을 위한 도시의 조성 또는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p> <p>3. “시민”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하거나, <u>관광객을 포함한 시를 방문한 사람 등 시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u></p> <p>4.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 또는 <u>장애의 유무 등과 -----</u> ----- ----- <u>계획하는 -----</u>.</p> <p>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이란 유니버설디자인을 구현함으로써 도시 내 모든 사람이 그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말한다.</p> <p>3. ----- ----- ----- <u>일시적으로 시에 -----</u> ----- <u>사람으로서 이용자와 종사자를 불문한다</u></p> <p>4. (현행과 같음)</p> <p>5.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이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해 시가 개발하여 배포하는 기준을 말한다.</p>
<p>제3조(기본이념) <u>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충</u></p>	<p>제3조(기본이념) <u>유니버설디자인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u></p>

족하여야 한다.

1. ~ 6. (생략)

<신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민과 협력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과 보급
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저
변확대를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
로 추진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제도개선 등
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
시키고 민간 확산을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
을 총괄 조정·시행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유
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과 관련
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
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
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고,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

해 -----.

1. ~ 6. (현행과 같음)

7. 정보통신기술 등 신기술에
융합 가능한 디자인 적용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및 진
흥·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
력, 조직, 재원의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
민·전문가 또는 관계기관과 협
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니
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는 건축, 도시, 교통, 공원 등에 관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할 때 필요시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 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적용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축기본법」 제3조제3호의 공공공간
2.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의 공적공간
3.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제1항제4호의 시설물 및 디자인 사업
4.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심의대상
5.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제7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행정구역 안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공간·시설 등에 적용된다.

1. 「건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 같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공공간 또는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의 공적공간 등
2. 도로(차도·자전거도로·보도) 또는 그 부속시설물 등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4.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등
5. 그 밖에 시 또는 공공기관에

<신 설>

제9조의2(시범사업 시행)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가이드라인 수립)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적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에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턱을 제거(높낮이차가 전혀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2.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턱을 제거하되, 불가피한 경우 경사로 등을 설치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 수립) ①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점검표를 배포-----
-----.

② 지침은 ----- 원칙에 따라 수립-----.

1. 가로, 공원, 시설, 건축물, 그 밖에 일반 시민에게 이용되는 공간 또는 시설 등에 요구되는 실용적이고 통합적인 유니버설디자인의 제시
2. 모든 시민의 접근성, 편리성, 안전성, 쾌적성, 선택 가능성을 높이는 도시 조성을 위한 지침의 제시

3. 장애인화장실의 최소면적은 4m²이상으로 한다.

4. 보도의 횡경사는 1/24이하로 한다.

5. 보도의 공적 영역이 사적영역에 의하여 침해받지 않도록 한다.

<신 설>

제11조(가이드라인 등의 적용) ①

가이드라인은 제7조의 적용범위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의 적용범위 중 의무적용 시설 및 건축물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은 제외한다.

③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공공시설 및 공공공간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

3. 모든 시민이 지침을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높은 내용 제시

<삭 제>

<삭 제>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 외에도 세부유형별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1조(지침 등의 준수) ①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속부서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점검표를 작성하여 심의를 주관하는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2회 이상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시장이 정하는 하나의 부서에 제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에서 심의 전 유니버설디자인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점검표를 제출한

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득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것으로 본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관련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별표 1 유니버설디자인 심의 대상 사업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관한 사항
4. 별표 2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의 인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에 시장이 정하는 수 이상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 공공시설물 등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7조 제1호 및 제3호

2. 건축위원회 : 건축물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7조제2호 및 제4호, 제5호

<신 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 진흥위원회, -----

----- 건축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5조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 ---- 진흥위원회·건축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 전문가(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전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③ -----

--.

1.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별표 1에 따른 심의대상 중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소관 사항 및 그 밖에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는 사항

2. 건축위원회: 별표 1에 따른 심의대상 중 건축위원회 소관 사항

3. 도시공원위원회: 별표 1에 따른 심의대상 중 도시공원위원회 소관 사항

<삭 제>

1.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의 제·개정
에 관한 사항
4. 제3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운영
하는 대상
5.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
6.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민간시
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
한 학술적 조사 연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
8.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 등
에 관한 사항
9.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활
성화 및 계획 추진에 관한 사
항
10.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여자의 선정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도
시조성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② (생략)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 <단서 신설>

1. ~ 4. (생략)

④ (생략)

제20조(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치·운영 등) ① (생략)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위한 육성방안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전문적 연구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치·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진흥·발전을 위한 전문적 연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업무가.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및 신사업 발굴

나. 지침 수립·고도화 및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관련 연구

다. 유니버설디자인 현황 또는 실태 조사

2.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유 네트워크 기반
구축

3.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신사업 발굴 및 정책적 지원
을 위한 컨설팅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
는 생활환경 인증을 위한 지
원 및 컨설팅

5. 가이드라인 마련 및 소식지
발간

6.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무

7.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현황
및 실태조사

8.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인력의
발굴 및 전문가 육성

2.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실행
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업무

가. 유니버설디자인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나.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관련 사업의 기획·실행·지
원

다.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자문·모니터링

3.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정보
제공·공유

4.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교육·
홍보·인력양성 및 인식개선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9.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삭 제>

10.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상품, 제품, 소프트웨어 등 기
술개발

<삭 제>

11.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홍
보 및 교육

<삭 제>

12. (생 략)

5. (현행 제12호와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공공시
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
하는 자가 제10조에 따른 가이
드라인을 적용하여 신규 시설물
의 설치, 신축 및 증·개축, 용
도변경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
는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가
이드라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유니버
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해 유니
버설디자인의 개발 또는 적용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
는 단체에 대해 업무수행에 필
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인센티브제
도를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
-----.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
는 법인 또는 단체는 사업계획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용 지

<신 설>

제22조(시민참여)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함에 있어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시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사전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관계기관의 협력 등)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의

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의2(시범사업)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추진에 관한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2조(시민참여)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듣거나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제22조의2(전문가의 참여)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의견청취 방법, 위촉 방법, 활동범위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3조(관계기관의 협력 등) -----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예산 및 행정적 지
원을 할 수 있다.

또는 -----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의 기본이념 및 지침 등 용어의 정의 추가, 조항별 의미 명확화,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위원회 심의사항 정비를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상승 요인은 없음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제7조)에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이 추가되었으나, 기존에 관련부서에서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이므로 추가 비용 발생은 없으며,
-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제21조) 개정 역시 기존 조항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추진되었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도 없음
- 제11조(지침 등의 준수) 조항의 경우 공공부문의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강화를 위하여 공공건축물 등 건립추진 담당부서의 절차적 역할에 대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이효진(☎ 02-2133-2727)